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89
----------	-------

발의연월일 : 2023. 4. 20.

발의자 : 이정문 · 안민석 · 박상혁

이원욱 · 김철민 · 김윤덕

기동민 · 민형배 · 김원이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을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기존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1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2.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p> <p><u>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u>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신 설></u></p>	<p>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p> <p>-----</p> <p>-----</p> <p>-----.</p> <p><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신 설></u></p>	<p>1. <u>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u>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p> <p>2. <u>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u>.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 한다.</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